

명실상부한 全畜產人の 협동조직체로



오세정

(건국대 축산대학 교수)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때 축산인의 오랜 염원이던 축협중앙회가 발족됨을 자축과 경하하는 바이며 창립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와 기관에 대하여 사의를 우선 표하는 바이다. 축협이 현재까지는 농협의 특수조합으로 예속되어 빛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팔세도 없지 않아 많았던 것으로 느껴왔다.

축산분야도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수급조절, 유통체계면에서는 과거나 다름없이 전근대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축협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축산인의 참여와 협동단결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부인못할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은 가격의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되며 이로 인하여 안정된 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심지어 외국에서 육류와 분유, 난분등을 도입하게되고 이로 인해 축산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생기곤 하였다.

앞으로 국민소득증대와 식생활의 개선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격증할 것에 대비하여 생산기반의 안정적구축과 자급자족에 의한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하며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보급으로 생산능력을 극대화하여 합리적인 경영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 輿國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때라고 본다.

새로 發足되는 축협중앙회에 대하여 전 축산인은 큰 기대와 주시 그리고 큰 성과있기를 갈망하며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니 참고하시어 훌륭한 축협중앙회가 되며 협동조합의 참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1.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합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이 지나친 官製組合이 되어도 아니되며,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강직성을 떠워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관제조합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조합에 참여도나 이용도가 적고 협력과 단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의 정신자세가 관료적인 권능에다 無事安逸, 타성과 인습에 젖어 있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 참된 조합은 협회원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단결하여 공생, 공영,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면 축협중앙회 운영은 축산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업자들이 적극인 협조와 참여하는 자율성이 보장된 중앙회가 조직 운영되길 바란다.

2. 협동정신에 의하여 굳게 단결하도록 하며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

양축가들의 이익과 권익보호 나가서는 사회적 민주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어야 하며 참된 협동정신에 의한 단합으로 축산업의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중앙회가 되어야 하며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하더라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항상 느끼고 실증되는 일이다.

그러니 첫 發足되는 축협중앙회가 명실상부하게 축산업의 발전과 권익보호체로서 나가야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면 가능한 한 축산인으로 구성 운영되길 바라며 비축산인들보다 축산과 출신들은 자기전공에 대한 사명감이 큰 줄 알고 있다.

그러니 권력의 배경이나 情實採用은 불신과 이화감을 가져오며 비능률과 무능이 뒤따르게 되니 적재적소 인선이 잘 되어야 축협의 기능을 십분발휘 할 수 있으며 협력과 단합이 잘 이루어 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 축종별로 조합을 재조직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현 시·군단위 축협을 점차 축종별 또는 주생 산물별로 조합을 개편하여야 한다. 즉 낙농조합, 양돈조합, 채란계조합, 육계조합, 양돈조합, 비육우조합 등 지역별로 또는 주생 산단지 별로 조합여건을 갖추면 승인하여 주며 스스로 참여와 권익보호 및 경영개선을 하도록 되어야 한다.

현재의 축협은 각 축종이 모두 합쳐져 있어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얹혀어 운영의 効能化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은 생산품별로 조합을 세분 구성함으로서 생산물의 유통, 공동판매, 기술개발 보급, 공동영역, 시설의 공동활용, 수급조절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 예속된 사료공장, 유가공 등 축산관련 업체는 특수산하업체로 존속 운영하면 된다.

4. 가축의 다소를 막론하고 양축농가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되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는 정확한 가축의 통계를 파악하여 생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체계를 확정함으로서 생산자나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고 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생산조절을 강력히 실천하자는 의도이다.

그리고 물자의 구입, 판매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을 결성대행함으로서 양축가에게 복잡한 신경쓰지 않게 하여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적게 하며 또한 담당의 전문화로 정보의 신속화 및 품질의 정확한 구분에 의한 구

판으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有利點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매월 정규적으로 가축사육통계 및 생산통계를 조합해 보고하여 전국적인 것을 집계하여 수급의 조절 및 向后 예고지표를 발표하여 건전한 축산발전을 도모케 할 것.

5. 수급조절과 저장가공에 주력할것

유통체계의 원활화 소비자의 불신을 제거하여 중간상인의 횡포와 과잉이윤을 방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양축가들이 하기 어려운 저장시설의 확충, 가공품개발에 의한 소비확대를 위한 시설이 확장되어야 하며 특히 양계분야의 宿願인 도계유통을 위한 시설확충

과 도계품의 유통체계를 확립 소비 촉진토록 하여 농가공공장 설립 등 축산물의 생산과잉 등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대폭 설비할 뿐만이 아니라 육가공, 유가공, 난가공 등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

아무쪼록 건전한 축산업 경영과 안정된 기반조성으로 축산시책의 강력한 구현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축협중앙회가 전 축산인의 집결과 단결로서 새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되길 바랍니다.

축협중앙회가 전 축산인의 협동조직체로 건전하게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수원가축약품

축산인의 사랑방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대표 : 박 은 권

가축질병·사양관리상담

가축약품

축산기구

기타축산관계일체

